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기획재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계약 절차 단축, 조달참여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업체 지원 등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20.4.8., 제4회 비상경제회의)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근거하여 불입과 같이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1부.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국민연금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운영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제청장,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원광진흥장, 경찰청장, 병무청장, 농촌진흥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기업부장관, 기상청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새만금개발청장, 통계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청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특허청장, 국가데이터대책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사무총장

주무관 **황명희** 서기관 **박주연** 계약제도과 과장 **김현철** 국고국장 **전일 2020.4.9. 이명옥**

참조자

시행 계약제도과-665 (2020.4.9.) 접수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길아로 477, (어진동, 기획재정부) / <http://www.moef.go.kr>

전화번호 044-215-5226 팩스번호 044-215-8113 / hwangmhui@korea.kr / 대국민 공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 ◇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참여기업·특별재난지역 기업 지원 필요
- ◇ 동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서 **2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할 수 있음

1 발주방식 결정

- 1 (긴급 수의계약)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극 해석
- 2 (지역제한 입찰)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업체 판로지원을 위해 소규모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역제한입찰**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소재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 납품지가 대구·경북인 계약을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업체만 입찰참가 허용***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 2천만원~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납품지가 대구·경북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소재 업체만** 견적서 제출 허용*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다만, 해당지역내 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예시: 10인 미만),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계약 등의 경우는 **지역제한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입찰단계

- ③ (현장설명 및 평가) 현장설명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전환하여야 함
- 공공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되, 기술형입찰 등 현장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전환하여 집행하고, 평가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기관은 조달청의 e-발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 신규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④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③ 입찰단계

- ⑤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함
- 선금 (선금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5일 이내)
- *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
- 하도급대금 (대가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5일 이내)
- *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계약분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

⑥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납품책임을 면제함

- 현행 법령상 계약지체 및 불이행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재하도록 되어 있음
-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아니함